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일	반	회	계				
☐ 방	송	통	신	발	전	기	금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 1	
1. 총 괄 …………… 1	
2. 세입세출예산안 …………… 5	
3. 기금운용계획안 …………… 12	
II. 검토의견 …………… 19	
1. 총괄 …………… 19	
1)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안 조정 필요사항 …………… 19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 32	
1) 과징금(56-565): 장기간 지연되는 주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및 적정 세입예산 편성 필요 …………… 32	
2) 법정위원회 운영(7131-30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에 맞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필요 …………… 40	
3)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141-301): 민간보조방식으로 통신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의 적절성 검토 필요 등 …………… 47	
4)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7131-307):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 59	

3.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64
5) 가산금(58-581):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는 가산금 수입 편성 필요	64
6) 아리랑국제방송지원(3131-302), 국악방송 지원(3131-304): 기금지원 의 타당성 검토 필요	70
7)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251-306):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관련 방미심위와의 면밀한 협조관계 구축 필요	77
8)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3133-303): 미디어교육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노력, 협약사업 적극 발굴 등 수입 다변화 필요	84

I.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1. 총괄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지출 규모는 2,372억 6,200만원으로, 2025년도 2,422억 6,600만원 대비 50억 400만원(△2.1%) 감소하였음.

- 2026년도 예산안(일반회계)의 총지출 규모는 521억 7,800만원으로, 2025년도 487억 3,800만원 대비 34억 4,000만원(7.1%)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850억 8,400만원으로, 2025년도 1,935억 2,800만원 대비 84억 4,400만원(△4.4%)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총지출 계(A+B)	242,266	237,262	△5,004	△2.1
예산(일반회계)(A)	48,738	52,178	3,440	7.1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B)	193,528	185,084	△8,444	△4.4

주: '25.9. 제출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이체·이관받은 예산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나. 2026년도 재원배분 방향

○ 2026년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 조성, ② 국민이 행복한 이용자 정책 조성을 핵심 전략 목표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 조성을 위해서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위치정보 사업 모델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화를 지원하며, 안전한 AI 활용기반 조성 및 불법스팸·불법유해정보 차단 등을 통해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 ② 국민이 행복한 이용자 정책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맞춤형 TV 보급 확대를 통해 소외계층의 시청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하며,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및 방송정보 가치 정보 분석 등을 실시하여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 전략목표 1 :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을 조성한다.	1,154	55.7
• 전략목표 2 : 국민이 행복한 이용자 정책을 조성한다	917	44.3
계	2,071	100.0

자료: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과계획서

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12개 세부사업을 이관 받았고, 해당 사업들의 2026년도 예산안은 393억 3,500만원임.

○ 주요 이관사업은 ‘디지털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97억 9,600만원,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 41억 5,700만원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도 이관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과학기술 장기통신부	일반회계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일반회계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9,767
과학기술 장기통신부	일반회계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일반회계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4,157
과학기술 장기통신부	일반회계	프로그래머블미디어 핵심기술개발(R&D)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일반회계	프로그래머블 미디어 핵심기술개발 (R&D)	4,000
과학기술 장기통신부	일반회계	방송통신재난관리 (정보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일반회계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310
과학기술 장기통신부	일반회계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일반회계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미편성
과학기술 장기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총액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87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과학기술 장기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191
과학기술 장기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대상 인건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총액대상 인건비	2,431
과학기술 장기통신부	방발기금	방송콘텐츠 진흥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발기금	방송콘텐츠 진흥	16,792
과학기술 장기통신부	일반회계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융합인재 양성				
과학기술 장기통신부	방발기금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발기금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500
과학기술 장기통신부	방발기금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정보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발기금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정보화)	930
과학기술 장기통신부	방발기금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정보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발기금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정보화)	170
합계						39,335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되는데, 2025년도 예산 309억 5,100만원에 비하여 104억 400만원(△33.6%) 감액된 205억 4,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증감액(B-A)	증감률(%)
벌금 및 과료	6	6	0	0.0
과태료	4,077	4,077	0	0.0
과징금	25,585	15,134	△10,451	△40.8
가산금	180	200	20	11.1
기타경상이전수입	979	979	0	0.0
면허료 및 수수료	74	78	4	5.4
기타 잡수입	1	1	0	0.0
기타재산이자수입	49	72	23	46.9
계	30,951	20,547	△10,404	△33.6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벌금 및 과료¹⁾는 2010년 이전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예산액 수준인 600만원이 편성됨.

1) 2010년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벌금 및 과료’로, 이후 부과된 과태료는 2010년 신설된 ‘과태료’ 항목으로 계상됨.

- 과태료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데,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수준인 40억 7,700만원이 편성됨.
- 과징금 역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데,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104억 5,100만원(△40.8)이 감액된 151억 3,400만원이 편성됨.
- 가산금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 시 부과되는데,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2,000만원(11.1%) 증액된 2억원이 편성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및 소송비용 보전금 등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수준인 9억 7,900만원이 편성됨.
- 면허료 및 수수료는 방송국 및 방송보조국 허가 신청 수수료로 2025년도 대비 400만원(5.4%) 증액된 7,800만원으로 편성됨.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출연 및 보조사업비 예치 이자수입으로, 2025년도 대비 2,300만원(46.9%) 증액된 7,200만원로 편성됨.

나. 세출예산안

1) 총괄

-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21억 7,800만원으로, 2025년도 487억 3,800만원 대비 34억 4,400만원 (7.1%) 증액 편성됨.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24,486	25,407	26,732	1,325	5.2
기본경비	4,275	3,563	3,611	48	1.3
주요사업비	19,246	19,768	21,835	2,067	10.5
계	48,007	48,738	52,178	3,440	7.1

주: '25.9. 제출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2025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금액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이체·이관받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인건비

-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267억 3,2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254억 700만원 대비 13억 2,500만원 (5.2%)이 증액됨.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인건비 합계	24,488	25,407	26,732	1,325	5.2
☐ 세 목 별					
○ 보 수(110-01)	23,463	24,050	25,366	1,316	5.5
○ 기타직보수(110-02)	909	1,171	1,172	1	0.1
○ 연가보상비(110-05)	116	186	194	8	4.3

주: '25.9. 제출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2025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금액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이체·이관받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인건비 처우개선 및 전문임기제 채용 등으로 전체 인건비는 13억 2,500백만원 증액됨.

3) 기본경비

-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36억 1,1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35억 6,300만원 대비 4,800만원 (1.3%)이 증액됨.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 액 인 건 비 대 상	운영지원과	1,169	1,087	1,119	32	2.9
	기획조정관	162	178	190	12	6.7
	대변인	73	78	83	5	6.4
	방송정책국	21	24	24	0	0.0
	이용자정책국	33	34	34	0	0.0
	방송기반국	12	17	15	△2	△11.8
	방송통신사무소	93	106	106	0	0.0
	소 계(A)	1,563	1,524	1,571	47	3.1
총 액 인 건 비 대 상	운영지원과	760	598	655	57	9.5
	기획조정관	1,301	714	714	0	0.0
	대변인	42	47	42	△5	△10.6
	방송정책국	117	107	137	30	28.0
	이용자정책국	140	153	140	△13	△8.5
	방송기반국	95	100	95	△5	5.0
	방송통신사무소	257	320	257	△63	△19.7
	소 계(B)	2,712	2,039	2,040	1	△0.0
합 계(A+B)		4,275	3,563	3,611	48	1.3

* 2025년 9월 제출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정부조직개편('25.10.1.)으로 신설된 방송미디어진흥국 기본경비는 제외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 주요사업비

-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218억 3,5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197억 6,800만원 대비 20억 6,700만원 (10.5%)이 증액됨.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19,246	19,768	2,1835	2,067	10.5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497	1,940	2,338	398	20.5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2,080	2,705	2,401	△304	△11.2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215	215	183	△32	△14.9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3,221	3,201	3,304	103	3.2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5,642	6,089	5,480	△609	△10.0
EBS 방송인프라개선	983	1,210	1,144	△66	△5.5
국내외협력 업무수행	574	442	442	0	0.0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87	361	366	5	1.4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234	237	242	5	2.1
법정위원회운영	131	202	347	145	7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설운영	946	969	857	△112	△11.6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108	185	205	20	10.8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1,248	841	3,530	2,689	319.7
행정사무정보화	1,080	1,171	996	△175	△14.9

주 1. 음영: 증액사업

주 2 2025년 9월 제출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조직개편('25.10.1.)으로 인해 과기정통부로부터 이체·이관받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은 방송재난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신속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26억 8,900만원(319.7%) 증가한 35억 3,000만원이 편성됨.
- ‘법정위원회운영’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정책수립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4,500만원(71.8%) 증가한 3억 4,7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용계획안

가. 수입계획안

-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 규모는 9,986억원 2,400만원으로, 2025년도 수정대비 1,181억 7,400만원 (13.4%)이 증가하였음.

<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계획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 감	
				(B-A)	(B-A)/A
수입 합계	870,450	880,450	998,624	118,174	13.4%
☐ 자체수입	638,778	638,778	873,303	234,525	36.7%
○ 법정부담금	563,333	563,333	848,525	285,192	50.6%
○ 재산수입	5,320	5,320	3,133	△2,187	△41.1%
○ 기타수입	70,125	70,125	21,645	△48,480	△69.1%
☐ 정부내부수입	177,258	187,258	-	△187,258	△100.0%
○ 공자기금 예탁원금회수	-	-	-	0	0.0
○ 공자기금 예탁이자수입	-	-	-	0	0.0
○ 공자기금 예수금	177,258	187,258	-	△187,258	△100.0%
☐ 여유자금회수	54,414	54,414	125,321	70,907	130.3%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미통위·과기정통부 공동관리기금으로 수입은 통합하여 작성

- 첫째, 자체수입 중 법정부담금은 방송사 부담금 및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으로, 법정부담금 8,485억 2,500만원 중 주파수할당대가는 6,959억 1,700만원이고 방송사분담금은 1,526억원 800만원임.
- 주파수할당대가는 주파수 재할당 등에 따라 2025년도 대비 2,898억 700만원 증가된 6,959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방송사 부담금은 IPTV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5년도 대비 46억 1,500만원 감소된 1,526억 800만원이 편성됨.

<방송사 부담금 수입 예산>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자	2026년 전망액
방미통위	지상파	20,949
	종편·보도 PP	7,177
	종합유선(SO)	23,516
	위성방송	7,009
	IPTV	77,302
	홈쇼핑	16,655
합 계		152,608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5년도 대비 21억 8,700만원 감소한 31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경상이전수입은 2025년도 대비 484억 8,000만원 감소한 216억 4,500만원이 편성됨.
- 둘째, 정부내부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2025년 대비 전액 감소하여 편성되지 않음.
- 셋째, 여유자금회수는 통화 및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2025년 기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2025년도 대비 709억 700만원 증가한 1,253억 2,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 개요>

(단위: 백만원)

부처	소관	수입 (998,624)	지출 (998,624)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방송사 분담금	자체수입 (873,303)	사업비 (185,0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 할당대가	정부내부수입 (0)	여유자금 등 (409,905)
		여유자금회수 (125,321)	사업비 (403,635)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나. 지출계획안

1) 총 괄

-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은 9,986억 2,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181억 7,400만원(13.4%)이 증액 편성되었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지출계획안은 1,850억 8,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90억 3,400만원(△4.7%)이 감액되었음.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A)	2026 계 획(B)	증 감 (B-A)	(B-A)/A
지출 합계	880,450	998,624	118,174	13.4%
○ 사업비	738,456	588,719	△149,737	△20.3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94,118	185,084	△9,034	△4.7
▪ [3131]방송인프라지원	58,228	57,817	△411	△0.7
▪ [3132]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76,742	74,887	△1,855	△2.4
▪ [3133]시청자권익보호 및 참여활성화	23,709	19,957	△3,752	△15.8
▪ [3134]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8,285	5,523	△2,762	△33.3
▪ [3135]방송통신운영지원	6,712	6,499	△213	△3.2
▪ [3251]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	20,442	20,401	△41	△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4,338	403,635	△140,703	△25.8
○ 기금운영비	4,073	4,102	29	0.7
○ 정부내부지출	46,248	100,239	53,991	116.7
- 기금예수이자상환	46,248	50,239	3,991	8.6
- 기금예수원금상환	0	50,000	50,000	순증
○ 여유자금운용	91,673	305,564	213,891	233.3

주 1. 2025년은 수정액을 기준으로 작성

주 2 2025년 9월 제출된 정부예산안 기준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소관 지출
계획안 중 기금운영비는 41억 200만원으로 2,900만원(0.7%) 증액되었고,
기금예수이자상환은 502억 3,9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39억 9,100만원
(8.6%) 증액 편성 되었으며, 기금예수원금상환을 500억원 신규 편성
하였고, 여유자금운용은 3,055억 6,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138억
9,100만원(233.3%)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사업비

- 2026년도 사업비 계획안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방송인프라
지원 4억 1,100만원(Δ 0.7%),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18억
5,500만원(Δ 2.4%),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37억 5,200만원
(Δ 15.8%),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27억 6,200만원(Δ 33.3%), 방송
통신 운영지원 2억 1,300만원(Δ 3.2%),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4,100만원(Δ 0.2%)이 2025년도 계획 대비 감액 편성되
었음.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계획(B)	증 감 (B-A)	(B-A)/A
□ 사업비	200,478	194,118	185,084	△ 9,034	△ 4.7
○ 방송인프라지원	61,710	58,228	57,817	△ 411	△ 0.7
-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32,774	30,064	31,083	1,019	3.4
-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13,430	12,070	11,022	△ 1,048	△ 8.7
- 국악방송 지원	5,842	5,258	4,732	△ 526	△ 10.0
-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5,034	6,272	5,916	△ 356	△ 5.7
- 지역·중소방송콘텐츠 경쟁력강화	4,530	4,464	4,964	500	11.2
- AM라디오송출지원	100	100	100	-	-
○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77,419	76,742	74,887	△ 1,855	△ 2.4
- 미디어다양성증진	3,290	3,290	2,155	△ 1,135	△ 34.5
-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468	457	457	-	-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20,176	21,870	19,677	△ 2,193	△ 10.0
-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13,802	14,545	14,719	174	1.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36,052	33,630	34,893	1,263	3.8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 구축	1,770	1,640	1,692	52	3.2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	622	565	620	55	9.7
-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300	270	270	-	-
- 인터넷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939	475	404	△ 71	△ 14.9
○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23,099	23,709	19,957	△ 3,752	△ 15.8
-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1,444	1,276	894	△ 382	△ 29.9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21,655	22,433	18,863	△ 3,570	△ 15.9
-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	-	200	200	순증
○ 방송콘텐츠 경쟁력강화	9,643	8,285	5,523	△ 2,762	△ 33.3
- 방송콘텐츠 기반강화	297	290	270	△ 20	△ 6.9
- 방송평가 기반조성	871	850	508	△ 342	△ 40.2
- 방송광고 공공인프라구축지원	2,449	1,932	1,352	△ 580	△ 30.0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2,356	1,883	944	△ 939	△ 49.9
- 방송정보활용기반 체계화	202	452	407	△ 45	△ 10.0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2,868	2,278	1,442	△ 836	△ 36.7
- OTT산업 경쟁력 강화	600	600	600	-	-
○ 방송통신 운영지원	7,278	6,712	6,499	△ 213	△ 3.2
-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2,392	2,400	1,768	△ 632	△ 26.3
-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2,148	1,626	1,445	△ 181	△ 11.1
- 재난방송 운영지원	2,738	2,686	3,286	600	22.3
○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21,329	20,442	20,401	△ 41	△ 0.2
-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지원체계 강화	1,400	1,360	1,088	△ 272	△ 20.0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629	1,466	2,291	825	56.3
-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	6,463	6,140	5,219	△ 921	△ 15.0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830	792	781	△ 11	△ 1.4
- 위치정보산업활성화기반구축	1,970	1,920	1,920	-	-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4,662	4,195	4,991	796	19.0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3,230	3,370	2,864	△ 506	△ 15.0
- 인터넷이용자보호 지원	1,145	921	969	48	5.2
- 안전한 시·현황 기반조성	-	278	278	-	-

주: 음영은 10% 이상 증액사업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2억원이 신규 편성됨.
-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은 아동·청소년 유해정보·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보호 체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규 내역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이 반영되어 2025년도 예산 대비 8억 2,500만원(56.3%) 증가한 22억 9,100만원이 편성됨.
- ‘재난방송 운영지원’ 사업은 방송을 통한 정확·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으로 태풍·지진·산불 등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6억원(22.3%) 증가한 32억 8,600만원이 편성됨.

II. 검토의견

1. 총괄

1)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안 조정 필요사항

- 방미통위 상임위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고 비상임위원이 0명에서 4명으로 증가 됨에 따라, 상임위원 인건비 감액, 비상임위원의 경우 회의 관련 수당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
- 방미심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되면서, 직급수준, 인건비 및 관련 경비 지급방식, 방미심위 위원 인건비 수준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필요
- 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진흥국’이 신설되고 관련 인력 및 사업이 이관되면서 관련 경비는 물론, 추후 위원회 구성·운영을 대비한 기관 기본경비 수준에 대한 고려 필요

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변동 개요

- 2025년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조직 및 인력의 변동이 발생하였음.

- 舊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그 구성이 변경되었음.

- 또한, 기존 과기정통부가 담당하였던 유료방송 등 방송진흥과 관련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 ‘방송 미디어진흥국’이 신설되는 등 정원이 33명 증가하였음.

< 조직개편 전/후 정·현원 >

구분		계	장관급	차관급	고공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정원	개편후	316	1	2	8	7	17	21	96	164
	개편전	283	1	4	7	6	15	19	81	150
현원	개편후	338	0	0	8	8	18	19	117	168
	개편전	306	1	0	7	8	16	17	103	154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에 따라 2025년 10월 1일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전입되는 인원 3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이 이체되었음.

- 인건비의 경우 전입인원 33명에 대한 연봉월액 계산 후 3개월 예산을 산정하여 이체하였고, 기본경비는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의 기본경비 사업예산의 1월부터 9월까지의 집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이체함.

< 인건비, 기본경비 예산 이체 현황 >

세부사업(주는 소관)	세목	이체 금액	세부사업(받는소관)
총액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12,051,450원	방송미디어진흥국 (총액대상)
	기타운영비	3,339,620원	
	직책수행경비	8,656,460원	
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4,174,690원	방송미디어진흥국
	공공요금및제세	1,039,700원	
	임차료	6,258,900원	
	국내여비	14,553,000원	
	국외업무여비	3,847,550원	
	관서업무추진비	3,452,870원	
총액대상 인건비	보수	579,385,880원	방송미디어진흥국 인건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 방미통위 정무직공무원 인건비 및 관련 경비 등 조정 필요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방미통위 위원 관련 인건비 및 기본경비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정부안 편성 시점 8월 말은 조직개편 이전 舊방통위 정무직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음.

<방미통위 위원 관련 인건비 및 기본경비 편성현황>

구 분	세 목	예 산	산출내역	비 고
2025년 예산	보수	555,405	봉급 1. 장관(급) 12,111,000원*1명*12개월*1.034 2. 차관(급) 11,762,000원*4명*12개월*1.034 가족수당 1. 장관(급) 40,000원*1명*12개월 정액급식비 1. 장관(급) 140,000원*1명*12개월 2. 차관(급) 140,000원*4명*12개월 직급보조비 1. 장관(급) 1,240,000원*1명*12개월 2. 차관(급) 950,000원*4명*12개월 조정재원(국회) : △248,000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 인건비 248,000천원 삭감
	기타운영비	0	-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장급 이상 비서실 운영비, 직책수행경비 전액 삭감
	직책수행경비	0	-	
2026년 예산안	보수	830,550	봉급 1. 장관(급) 12,474,300원*1명*12개월*1.0397 2. 차관(급) 12,114,800원*4명*12개월*1.0397 가족수당 1. 차관(급) 120,000원*1명*12개월 정액급식비 1. 장관(급) 140,000원*1명*12개월 2. 차관(급) 140,000원*4명*12개월 직급보조비 1. 장관(급) 1,240,000원*1명*12개월 2. 차관(급) 950,000원*4명*12개월	정부안 편성 시점(8월)은 조 직개편 이전으로 기존 방통 위 정무직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
	기타운영비	0	-	‘25년 예산을 베이스로 편성하여 별도 증액 내역은 없음
	직책수행경비	0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상임위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고 비상임위원이 0명에서 4명으로 증가 됨에 따라,²⁾ 상임위원 인건비 감액, 비상임위원의 경우 회의 관련 수당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본부(총액대상)(7101-101) 내 보수(110-01)에서 상임위원 2명분 인건비 328,464,000원을 감액하고, 비상임위원의 회의 관련 수당으로 170,080,000원을 기획조정관(7111-212) 내 일반수용비(210-01)에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정무직 공무원 인건비 변동내역 >

구분	조직개편 전	조직개편 후	비고
위원장	172,194천원 (14,350천원*12월*1명=)	172,194천원 (14,350천원*12월*1명=)	1명
부위원장	164,229천원 (13,686천원*12월*1명=)	164,229천원 (13,686천원*12월*1명=)	1명
상임위원	492,696천원 (13,686천원*12월*3명=)	164,229천원 (13,686천원*12월*1명=)	3명→1명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③ (생략)

④ 비상임위원에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비상임위원 회의관련 수당 산출내역 >

구 분		조직개편 전	조직개편 후
회의 관련 수당	비상임 위원	- (미편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전원 상임위원으로 위원회 회의 관련 수당 미지급	17,008만원 ▪ 회의참석수당 : 3,340만원 - (대면회의) 4인 × 33회 × 15만원 - (서면회의) 4인 × 34회 × 10만원 ▪ 안전검토비 : 10,720만원 - 4인 × 67회(대면+서면) × 40만원 ▪ 여비 : 2,948만원 - (교통비) 2인 × 67회(대면) × 12만원 - (숙박비) 2인 × 67회(대면) × 10만원
합 계		-	17,008만원

- 주: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현행법 또는 개정안에 따른 정원에 맞게 모두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 보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92호) 등을 적용하여 산정함
- 2) 회의 개최 횟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법상 정원(5인)을 충족하여 운영된 2022년 회의 개최현황(대면회의 33회, 서면회의 34회)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모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가정함
- 3) 회의참석수당, 안전검토비는 타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의 사례(참고자료 참조)를 참고하여 산정함
- 4) 여비는 비수도권 인구 분포(약 49%)를 고려하여 비상임위원 4인 중 2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상 ‘국장급 이상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여 평균 왕복교통비(KTX 특실 평균비용) 등을 산정하였으며, 공식회의 전 사전 논의, 안전 설명등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여비횟수를 산정
- 5) 본 추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현행법 또는 개정안에 따른 정원에 맞게 모두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및 타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의 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 참석 위원 수, 회의 참석 수당 지급액 등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미심위 위원장·위원 인건비 관련 조정 필요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5년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非공무원 신분이었던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었음.³⁾
- 2026년도 예산안은 조직개편 전에 제출된 것으로 동 예산안에서 방미심위 위원장의 보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지원’ 사업 내 민간보조사업비 안에 포함하여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됨에 따라 심의위원장에 대한 보수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민간보조(260-01)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보수(110-01) 비목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지급 방식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며,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임.
- 또한 舊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보수에 대해, 국회 과방위는 기관의 경상경비나 인건비 등 예산 전액이 방송통신발전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④심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금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지급되며, 장관이나 차관 등에 비해 그 보수가 과다하다는 점에서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시 위원장 연봉을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등 주요 임원의 연봉을 삭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라는 부대의견⁴⁾을 의결한 바 있음.

- 심의위원장이 국가직 공무원 化 되면서 부대의견 취지는 달성될 것으로 보이나, 방미심위의 다른 심의위원과의 보수 수준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

- 방(미)심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의 보수자료를 살펴보면, 위원장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이 되면서 2025년과 2026년은 그 이전 기간에 비해 급여 총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급여 총액이 위원장 급여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현재와 같은 급여 수준이 지속된다면 위원장 보다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급여가 높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

4)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 과방위 부대의견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의 내역인 인건비에서 위원장 연봉을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등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의 연봉을 삭감(2억 4,200만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한다.

< 방(미)심위 위원장 급여 수준 >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	연봉액 ①	가족수 당 ②	정액급 식비 ③	직급보 조 ④	급여 총액 (①+②+ ③+④)	비고
방심위	2022년	187,427	480	1,680	0	189,587	공공기관 공통 처우개선 적용 (전년대비 연봉액 1.4% 인상)
	2023년	190,614	480	1,680	0	192,774	공공기관 공통 처우개선 적용 (전년대비 연봉액 1.7% 인상)
	2024년	195,380	480	1,680	0	197,540	공공기관 공통 처우개선 적용 (전년대비 연봉액 2.5% 인상)
	2025년	175,842	480	1,680	0	178,002	국회 과방위 부대의견 등에 따 라 전년대비 연봉액 10% 삭감
방미심위	2025 ¹⁾	149,692	480	1,680	14,880	166,732	정무직 공무원 (장관급) ²⁾
	2026년	154,932	480	1,920	14,880	172,212	2026년 공무원 임금인상 적용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일자로 적용

2) 방미심위 위원장 보수는 정무직 장관급(미확정)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미)심위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급여 수준 >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연봉액 ①	가족수당 ②	정액급식비 ③	급여 총액 (①+②+③)	비고
방심위	2022년	177,726	480	1,680	179,886	공공기관 공통 처우개선 적용 (전년대비 연봉액 1.4% 인상)
	2023년	180,748	480	1,680	182,908	공공기관 공통 처우개선 적용 (전년대비 연봉액 1.7% 인상)
	2024년	185,267	480	1,680	187,427	공공기관 공통 처우개선 적용 (전년대비 연봉액 2.5% 인상)
	2025년	185,267	480	1,680	187,427	전년 동결(위원 미위촉)
방미심위	2025년	185,267	480	1,680	187,427	보수 조정은 위원 위촉 후 전 체회의 의결 예정
	2026년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총액 인건비는 공통인상률 3.5%가 증액되었으나, 세부내 역은 향후 의결 필요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와 관련해, 방미심위는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민간 심의위원이며 현재 미위촉 상태인바, 관련 보수 조정 등의 사항은 추후 위원 위촉 후 방미심위 전체회의 의결 등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 현재 방미심위 위원장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인건비 및 관련 경비 등 지급 방식, 방미심위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건비 수준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기관 기본경비에 대한 고려 필요

-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과기정통부 내 ‘방송진흥정책국’이 없어지고, 방미통위 내 ‘방송미디어진흥국’이 신설되면서 인건비, 경비, 소관 사업 등이 방미통위로 이체·이관되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조직개편으로 방미통위가 출범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해 고려할 사항이 있음.

- 우선 앞서 언급하였듯이 방미통위에 비상임위원이 4명 위촉될 예정으로 이들에게 지급할 회의 관련 수당 등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를 편성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기존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통신재난관리 사업’이 방미통위로 이관되었는데, 동 사업 내 ‘재난방송온라인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내역사업의 경우 재난방송 송출을 방송사에 요청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공요금을 해당국의 기본경비 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했으나,⁵⁾ 2025년 방미통위의 방송정책국 기본경비 예산은 1억 3,700만원으로 공공요금을 기본경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다음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존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소속 1국 3과, 33명의 인력이 방미통위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이에 해당 인력들의 근무지 또한 세종과기부청사에서 정부과천청사로 변경되었음. 정부조직개편이나 정기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25년 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지급할 예정이나 2026년도 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5) 관련 공공요금 집행액은 다음과 같음

구분	‘21	‘22	‘23	‘24	‘25.9월말
요청건수	1,203	1,271	1,571	2,836	5,068
집행액(천원)	23,000	30,000	32,000	64,000	117,000

는 방미통위에서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지 이사비용에 대한 지원금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 둘째, 舊방통위의 경우 2025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시 기본경비가 정부안 대비 삭감되었으나, 신설된 ‘방송미디어진흥국’은 과기정통부에서 관련 예산을 이관받으면서 다른 국과의 기본경비 등의 차이가 존재함.

- 방송미디어진흥국을 제외한 방미통위 내 국·과의 경우 2025년 예산안 심의시 국장급 이상 부서 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이 전액 삭감되었고, 이외에도 여비나 일반수용비, 임차료, 업무추진비 등이 일부 삭감되었음.

- 그러나 ‘방송미디어진흥국’의 경우 기존 과기정통부에 편성된 예산을 이체·이관받으면서 국장급 이상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부서 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삭감되지 않았고 유지된 상태임.

- 국별 기본경비가 차등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은 기관의 사기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셋째, 방미통위 기본경비는 2025년 정부안(48.52억원) 대비 12.4

6)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사비 300만원을 20명 직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가정할 시 약 6,000만원의 국내여비가 필요하다고 함.

억원 감액된 36.1억원으로, 국내여비, 국외여비, 직책수행경비, 임차료, 유류비, 일반수용비, 관서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의 필수적인 활동과 관련된 예산의 부족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방미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통해 주요정책 등을 결정하나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임.
- 그러나 위원회 구성의 부재로 인한 기능의 마비는 추후 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삭감된 기본경비가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방미통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속조치, AI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마련 등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 조사, 출장 등 실무적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업무 정상화 지연 또는 정책품질 저하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1) 과징금(56-565): 장기간 지연되는 주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및 적정 세입예산 편성 필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지연된 과징금 부과 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법 집행 공백을 해소할 필요
- 현재의 과징금 세입예산안은 단통법 폐지 등 제도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로 과징금 세입을 조정할 필요

가) 사업 개요

- “과징금(56-563)”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 방송사업자들의 위법행위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세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4억 5,100만원(△40.8%) 감액된 151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과징금 세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2026 예산안 (D)	증감 (E= D-A)	증감률 (E/A)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징수대비 수납률(C/B)			
□ 과징금	25,585	339	31	0.1	9.1	15,134	△10,451	△40.8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9.

나) 검토의견

□ 과징금 부과절차의 조속한 완료 필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조사착수 → 시정조치안 통보 → 사업자 의견청취 → 위원회 심의·의결 → 처분 및 의결서 송부]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 ‘조사착수’ 단계는 인지 또는 신고를 통해 법 위반행위가 의심될 경우 실태점검 등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임.

- ‘시정조치안 통보’는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 내용, 제재 처분안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안을 마련하여 통지하는 단계이고, 시정조치안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 조치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회를 가지며, 방미통위는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등을 검토함(‘사업자 의견 청취’ 단계).

- 이후 조사 및 법리 검토 등이 완료되면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과징금 부과 여부와 최종금액을 의결(‘위원회 심의·

의결’ 단계)하고, 방미통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식적인 처분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송부(‘처분 및 의결서 송부’)하면,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불복 등을 진행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인앱결제 강제금지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임.

- 우리 국회는 2021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개정)’를 의결하였고, 2022년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로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후 방미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각각 최대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처분이 지연되고 있음.

<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금지 위반 과징금 부과 관련 경과 >

- ('22.5~8월) 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실시
- ('22.8월~'23.9월)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소지가 있는 앱 마켓사업자(구글, 애플, 원스토어)에 대한 사실조사 추진
- ('23.10월)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금지행위를 위반한 구글, 애플에 시정조치안 통보 및 관련 보도자료 배포
- ('23.12월~현재) 방통위, 시정조치안에 대한 구글·애플 의견서 접수('23. 12월) 및 의견서에 대한 사실확인 및 법리 검토 등 진행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외에도 방미통위는 2024년 10월 말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⁷⁾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10월 30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안을 통보하여 사업자 의견을 듣고 최종심의·의결을 앞둔 상황임.

○ 2021년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내외 주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 지연은 법률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유사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을 낮추는 등 규제환경의 불확실성을 초래함.

7) 유료 멤버십 가입 과정에서 ▲혜택을 허위·과장 고지하고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다크패턴’ 방식으로 유료 결제를 유도했으며 ▲해지 시 현금이 아닌 자체 쿠폰으로 환불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안임(舊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 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2024.10.30.).

나아가 관련 과징금 수입의 발생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 따라서 방미통위는 향후 적법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연된 안건들을 신속히 처리하여 법 집행 공백을 해소해야 할 것임.

□ 과징금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 방미통위의 과징금 예산안은 연례적으로 소관법률 위반에 대한 최근 5년간 과징금 결산액 평균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2023년도부터 과징금 수납액이 급감하면서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104억 5,100만원 감액한 151억 3,400만원을 편성함.

< 과징금(56-565)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25,585천원	▪ 소관법 위반 최근 5년간 결산액 평균(25,585) = 단말기유통법(21,696) + 전기통신사업법(3,651) + 방송법(193) + 위치정보법(28) + 전파법(11) + 방송광고판매대행법(6)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위반 소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20.8월 이관됨에 따라 과징금 결산액 5년 평균값(27,412)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과징금 결산액 3년 평균값(1,827) 제외함
2026 예산안	15,134천원	▪ 관련법 위반 과징금 최근 5년간 결산액 평균(15,134) = 단말기유통법(10,998) + 방송법(167) + 방송광고판매대행법(6) + 위치정보법(155) + 전기통신사업법(3,803) + 전파법(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20.8월)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과징금 결산평균액(4,455)은 제외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과징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세입예산안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나, 방미통위의 과징금 예산 대비 수납률은 매년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 과징금(56-565) 예결산 추이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A)						
2016	55,515	55,515	55,515	16,985	6,284	11.3	37.0	10,701
2017	30,012	30,012	30,012	20,135	20,023	66.7	99.4	112
2018	30,012	30,012	30,012	53,354	53,244	177.4	99.7	110
2019	30,012	30,012	30,012	5,831	3,820	12.7	65.5	2,011
2020	36,633	36,633	36,633	53,464	58,021	158.4	108.5	110
2021	30,012	30,012	30,012	-1,401*	-1,511*	△5.0	92.1	110
2022	26,183	26,183	26,183	17,053	16,932	64.7	99.3	121
2023	25,246	25,246	25,246	1,632	213	0.8	13.1	1,419
2024	25,585	25,585	25,585	3,983	3,571	14.0	89.7	412
2025.7	25,585	25,585	25,585	339	31	0.1	9.1	307
2026(안)	15,134	15,134	-	-	-	-	-	-

* 2021년 과오납반납(49.9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음수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미통위는 2017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과징금 과다추계와 관련해 국회의 시정요구⁸⁾를 받은 바 있으나, 아직 비슷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8)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시정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과 과태료 세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 과징금 수입은 대규모 위반 사건의 발생 및 처분시점,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예측이 어려워 예산안 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점을 가진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거 과징금 수입은 특정 연도에 단말기유통법 위반 등 대규모 제재가 집중될 경우 수백억 대로 급증했다가 해당 사안이 없는 경우 수십원 대로 급감하는 등의 변동성을 보였음.

○ 그러나 최근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과징금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단말기유통법 과징금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2년부터 과징금 부과 실적이 없는 상황이나,⁹⁾ 2026년도 과징금 세입안으로 편성한 151억 3,400만원 중 109억 9,800만원이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5년간 결산액 평균에 근거해 산정한 금액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것은 국가 재정 운용을 국회가 통제하도록 한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정부는 최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

9) 참고로 단통법 제정 이후 연도별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음.

2014년	24억원	2017년	21.24억원	2020년	512억원
2015년	315.8억원	2018년	506.39억원	2021년	37.9억원
2016년	18.2억원	2019년	28.51억원	2022~2025년	없음

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세입 규모의 착시를 유발할 수 있는 세입추계 오차를 가능한 줄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과징금 세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정한 과징금 세입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¹⁰⁾

10) 현재 예산안에 편성된 151억 3,400만원 중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과징금(109억 9,800만원)을 제외하면, 2026년도 과징금 예산안은 41억 3,600만원임. 구글 및 애플에 대한 과징금 예정금액은 약 630억원으로 추정되나 일반적으로 처분 부과가 임박하더라도 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당 금액을 과징금 세입예산안 편성 시에 반영하지는 않고 있음.

2) 법정위원회 운영(7131-30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에 맞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필요

-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에 상임위원 위촉계획 등을 수정하고 예산을 반영할 필요.

가) 사업 개요

- “법정위원회 운영(7131-304)”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정책 수립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2억 200만원 대비 1억 4,500만원(71.8%) 증액된 3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 예산으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등 10개의 법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함.

<2026년도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법정위원회 운영	144	131	202	61	347	145	71.8
○위원회 수당 및 안건사례비 등	137	126	137	137	130	△7	△5.1
○참석교통비	2	2	2	2	2	0	0.0
○간담회비	5	3	5	5	5	0	0.0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	-	58	58	210	152	262.1
☐ 세출예산비목	144	131	202	61	347	145	71.8
○일반수용비(210-01)	137	126	137	60	130	△7	△5.1
○국내여비(220-01)	2	2	2	1	2	0	0.0
○관서업무추진비(240-02)	5	3	5	0	5	0	0.0
○기타직보수(110-02)	-	-	58	0	176	118	203.4
○고용부담금(320-09)	-	-	-	-	34	34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9.

나) 검토의견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에 맞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 보수 예산 반영 필요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11)에 근거

11)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하여 2019년부터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약관, 품질 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신설 당시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제1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월 12일부터 2021년 6월 11일까지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운영되었고,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6월 12일부터 2023년

-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⑥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월 11일까지 위원장 포함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었음.

○ 이후 2023년 1월에 법 개정으로, 당초 위원장 포함 10명 이하의 위원 구성에서, 위원장 포함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되었음.

- 해당 「전기통신사업법」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적용례¹²⁾에 따라 2023년 7월 이후 구성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부터 적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인 2023년 7월 이후에 구성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제2항 종전 및 현행 규정 >

종 전	현 행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u>

○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개정 이후인 2025년 10월 현재 기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6명의 비상임위원(법조계 3명, 학계 1명, 회계 1명, 시민소비자단체 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12) 부 칙 <법률 제19153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법 개정 이후 구성된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의 위원은 2023년 8월 21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 임. 2024년 2월 27일에 추가로 6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16명으로 확대되었으나, 현재 기존 위원 10명의 임기가 도과되어 6명으로 운영 중임.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기수별 위원 구성 및 임기 >

구분	임기(2년)	위원 구성
제1기	· '19.6.12. ~ '21.6.11.	9인, 비상임
제2기	· '21.6.12. ~ '23.6.11.	10인, 비상임
제3기	· '23.8.21. ~ '25.8.20.	10인, 비상임
	· '24.2.28. ~ '26.2.27.	6인*, 비상임

* 최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16인 중 10인의 임기가 만료('25.8.20.)되어 현원 6인으로 운영 중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취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되었으나 위원 수 부족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용자 불만이 계속되고, 법정처리 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임.
-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분쟁조정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5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법 규정 30명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의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상임위원 2명을 하반기에 위촉할 계획을 세워, 상임위원 2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위촉이 지연되면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임.

○ 또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에도 여전히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위원 구성은 지연될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월 500만원을 12개월 동안 2명의 상임위원에게 지급하고, 6개월 동안 3인의 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편성내역 >

통신분쟁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 (25년)58백만원 → (26년)210백만원
 ※ 상임위원 2인×5백만원×12개월 + 상임위원 3인×5백만원×6개월

< 상임위원 1인당 기간별 소요 예산 >

구분			상임위원 1인당 소요금액(원)			비고
			1개월	1년	0.5년	
기타직보수 (110-02)	연 봉	연봉월액	3,606,200	43,274,400	21,637,200	
		정액급식비	140,000	1,680,000	840,000	-
	수 당	명절상여금	360,620	4,327,440	2,163,720	연봉월액×60%×2회(설,추석)/12개월
		기타	90,297	1,083,564	541,782	-
고용 부담금 (320-09)	퇴직급여적립금		342,098	4,105,176	2,052,588	(연봉+수당)×8.33%
	사회보험료		460,785	5,529,420	2,764,710	(연봉+수당) × 총 11.22%
상임위원 1인 소요 예산			5,000,000	60,000,000	30,000,000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에 상임위원 2인을 위촉할 예정으로 이들 2인에 대해서는 1년 소요액을 편성하고, 상임위원 3인은 2026년 하반기에 위촉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 또한, 현재 방미통위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위촉이 늦어지고 있으며, 2025년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 상임위원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였고, 올해 안에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상임위원 2명을 위촉하고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위원 10명에 대해서도 위촉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 그러나 이미 개정 법률 시행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을 위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2026년 예산안에 2명에 해당하는 보수만 전액 편성하고, 3명에 해당하는 보수는 6개월만 편성한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내년 하반기로 계획하는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위촉을 가능한 앞당겨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임위원 위촉계획 등을 수정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141-301): 민간보조방식으로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의 적절성 검토 필요 등

- 방미통위 소속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사무공간을 민간보조사업비로 조성하는 것은 민간보조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고, 나아가 통신분쟁조정이라는 국가사무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 관련 사업추진체계를 재검토할 필요
-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실태점검의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한계점이 있으므로, 방미통위와 KAIT 간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은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정보제공과 이용자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 및 상담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민간보조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3억 3,800만원으로, 전년 19억 4,000만원 대비 3억 9,800만원(20.5%)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사유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내역사업 내에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내내역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 률 (C/A)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	예산액 (A)	집행액 (실집행)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499	2,497 (2,424)	1,940	1,540 (840)	2,338	398	20.5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 화 및 보호	1,376	1,376 (1,344)	1,376	1,032 (553)	1,578	202	14.7
○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이용자보호	499	499 (499)	-	-	-	-	-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 터링	62	62 (59)	-	-	-	-	-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562	560 (522)	564	508 (287)	760	196	34.8
☐ 세출예산비목	2,499	2,497 (2,424)	1,940	1,540 (840)	2,338	398	20.5
○ 민간경상보조(320-01)	2,499	2,497 (2,424)	1,940	1,540 (840)	2,338	398	20.5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3)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이용자보호’,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내역사업은 시장조사심의관 신설('23.11.)에 따라 2025년에는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
석’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이관되었음.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9.

나) 검토의견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

○ 내역사업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는 통신분쟁지원시스템과 통신분쟁상담센터 등을 운영하여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것임.

- 통신분쟁조정제도란 이용자가 스마트폰·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받아 당사자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임.

- 동 내역사업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운영,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운영, 통신품질 현장측정 체계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통신분쟁조정 제도 홍보 등에 3,600만원, 통신분쟁조정위 상임위원 사무공간 구성에

5,600만원,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서버 이중화 등에 1억원을 증액하였음.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사업 증액내역 >

- | |
|---|
| <p>□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 (25년)564백만원 → (26년)760백만원(+19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운영 : 218백만원 → 222백만원(+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센터 운영 인력) 182백만원 → 186백만원(+4) ※인력 최저시급 인상분 ○ 통신분쟁조정 제도 홍보 및 협력체계 운영 : 0백만원 → 36백만원(+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분쟁 사례집 발간) 0백만원 → 5백만원(+5)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0백만원 → 21백만원(+21) - (세미나·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 0백만원 → 10백만원(+10) ○ 통신분쟁조정 사무공간(상임위원) 조성 : 0백만원 → 56백만원(+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공간 조성 인테리어) 0백만원 → 20백만원(+20) - (전산기자재 구매) PC, 모니터, 복합기 등 [0백만원 → 18백만원(+18)] - (사무기자재 구매) 책상·의자·파티션 등 [0백만원 → 18백만원(+18)] <p>□ 통신분쟁조정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5년)140백만원 → (26년)240백만원(+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서버 이중화) 0백만원 → 90백만원(+90) - (민원상담 통신시설 유지보수) 0백만원 → 10백만원(+10) |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미통위는 현재 소속 법정위원회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공간을 민간보조사업비 내에 편성하고 있는데, 사무공간의 경우 분쟁조정위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로 민간보조사업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로, 현재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는 ‘법정위원회 운영(7131-304)’에 방미통위가 직접 집행하는 ‘기타직보수(110-02)’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상임위원 사무공간과 관련된 비용은 현재 민간보조사업에 반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 사무공간 조성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 방미통위는, 동 예산으로 운영되는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통신분쟁 상담 및 통신분쟁조정회의 등이 수시로 개최되므로,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상임위원 전담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업무 연속성, 협업, 예산절감, 접근성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다는 의견임.
- 그러나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와 그 인력이 사용할 사무공간 등의 비용은 동일한 예산 체계 내에서 관리되어야 예산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것이고, 사무공간 구축에는 자산 취득이 수반되는데, 이를 방미통위의 직접 예산이 아닌 민간기구 보조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가능함.

○ 나아가,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당초 방미통위 소속 법정위원회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민간보조사업의 방식으로 운영된 것에 기인하며, 차후 사업수행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방미통위 소속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로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제5항¹³⁾은 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방미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하는 등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전제하고 있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등 행정효율 상 사무국 운영 등에 민간이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면 민간보조가 아닌 국가고유사무를 ‘위탁’하는 민간위탁의 방식이 적절할 것임.

13)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하 생략)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현재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접수~종결까지의 사건 관리 및 운영 등은 방미통위 내 통신분쟁조정팀에서 운영하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대면 분쟁조정실 운영, 상담센터 관리, 통신품질 현장측정 등은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구축·운영하고, 상임위원 사무공간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민간보조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임.
- 방미통위는 현재 KAIT는 부수적인 조정 지원업무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필수적인 운영기능이 사실상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수행되는 실정으로 보이므로, 현행 사업추진방식을 재검토하여 직접수행, 민간보조, 민간위탁 등의 범위를 구분해 적절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사업의 실효적인 추진 필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외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는 내역사업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의 내역사업으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사업이 2억 200만원 신규 편성되었음.
- 동 내내역사업은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¹⁴⁾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2025년 기준 46개사)에 대해, 국내대리인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안내서 제작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진행하는 사업임.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국내대리인 운영실태 점검 절차(안) >



< 국내대리인 지정 운영 실태점검 주요 내용(안) >

구분	유형	점검 내용
서면 점검	대리인 지정 여부	○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 ※ 타 사업자와 대리인 중복 지정 여부
	대리인 지정의 적정성	○ 대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 ○ 국내 법인 또는 지배력이 있는 법인을 지정했는지 여부
	대리인 정보 공개 여부	○ 인터넷사이트에 대리인 정보 게시 여부 ※ 게시 내용(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및 위치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 관계 부처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현황 등 ○ 이용자 민원처리 현황 ※ 향후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 현행화
현장 점검	주소 일치 여부	○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대리인 실제 운영 여부 확인
	대리인 업무 현황	○ 대리인 담당자 업무 범위 및 처리 절차 등
	국내대리인 인터뷰	○ 국내대리인 업무 이해 정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미통위는 동 내내역사업과 관련해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민간보조사업비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 국내대리인 지정 운영 실태점검 예산안 편성내역 >

구 분	산출내역	금액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운영 : 189백만원 ※ 책임연구원 : 7.4백만원 x 12개월 x 50% = 45백만원 ※ 보조원 : 2.8백만원 x 12개월 x 3명 = 102백만원 ※ 점검 여비, 법률자문, 공공요금 등 운영비 : 12개월 x 3.5백만원 = 42백만원 ○ 안내서 제작 및 설명회 : 13백만원 ※ 안내서 제작·인쇄·배포 : 2만원 x 150부 = 3백만원 ※ 장소 임차 등 설명회 기획·개최 : 5백만원 x 2회 = 10백만원	202백만원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와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정단체로, 방송통신시장 모니터링,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 사업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대리인 실태점검을 수행할 것으로 계획됨.

○ 그러나 KAIT가 국내대리인 실태점검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물적 한계점 등이 존재함.

- 첫째, 국내대리인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이 수반되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정보통신망법¹⁵⁾상 국내대리인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제도의 실태점검, 관리·감독, 위반시 제재 등의 권한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있다는 점에서 KAIT의 역할은 제한됨.

- 둘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는 대부분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된다는 점에서 법적 권한이 부재한 KAIT의 실태점검은 사업자의 협조 부재나 법적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KAIT는 실태점검을 위한 기초자료 등을 준비하는 역할이고 실태점검 등은 방미통위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함.

○ 향후 실효적인 실태점검이 될 수 있도록 KAIT의 역할은 해외사업자 지정현황 취합, 법규 안내 등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수집에 엄격히 한정하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 위반여부 판단,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장조사 실시 등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모든 핵심과정은 방미통위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방미통위와 KAIT 간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4)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7131-307):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 동 사업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과 사업물량이 대폭 확대되었음. 그러나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의 경우 매칭비 부담으로 지원기관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면밀한 집행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의 내역사업인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은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 지역에 라디오, DMB 수신환경을 개선해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 등이 원활하게 수신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재난피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등을 조사하는 ‘수신환경 실태조사’, 수신환경 불량인 터널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통해 기술지원을 하는 ‘음영지역 기술지원’, 중계설비 등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 등 3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동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26억 7,300만원 (456.9%) 증액된 32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 률 (C/A)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	예산액 (A)	집행액 (실집행)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1,256	1,248 (1,222)	841	677 (337)	3,530	2,689	319.7
○ 방송재난관리 강화	200	199	200	139	220	20	10.0
○ 방송재난관리 활동 지원	20	17	20	4	20	0	0.0
○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활동 지원	36	32	36	7	32	△4	△11.1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1,000	1,000 (974)	585	527 (187)	3,258	2,673	456.9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9.

나) 검토의견

☐ 수신환경 개선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실집행 관리 필요 등

- 동 내역사업은 ①수신환경 실태조사, ②음영지역 기술지원, ③ 수신환경 개선지원 등 3개의 내내역사업¹⁶⁾으로 구성되며, ‘수신

16) 내내역사업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신환경 실태조사)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터널, 지하공간)의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및 운용현황 파악
- (음영지역 기술지원)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 수신상태 불량인 터널 대상 기술지원을 통하여 음영지역 해소
- (수신환경 개선지원) 도로, 철도터널, 지하철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

환경 실태조사'는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직접 수행하고, '음영지역 기술지원'과 '수신환경 개선지원'은 도로·철도 터널 및 지하철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공고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이 중 '수신환경 개선지원'은 선정된 지원기관과 50:50의 매칭으로 보조금이 집행됨.

-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26억 7,300만원(456.9%) 증액되었으며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6년도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 산출내역>

구 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5억 8,500만원	32억 5,800만원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3억 1,000만원 = 약 5,600개 시설 × 측정장비 및 인력 55천원	5억 1,000만원 = 약 5,600개 시설 × 측정장비 및 인력 55천원 + 측정시스템 2억원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9,700만원 = 51개소 × 측정장비 및 인력 1.9백만원	5억 7,000만원 = 190개소 × 측정장비 및 인력 3백만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1억 7,800만원 =FM/DMB 중계기 2,000만원 × 18대 × 50%	21억 7,800만원 =FM/DMB 중계기 2,010만원 × 218대 × 50%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동 사업은 전년 대비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물량확대에 맞춰 지원대상기관의 신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집행과 관련된 우려가 있음. 특히 '수신환경 개선지원'의 경우 도로·

철도터널, 지하철 시설관리기관에서 공사비, 운용비용 등을 부담하고, 동 사업을 통해 중계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식으로 50:50의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바, 사업자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자의 신청이 저조할 수 있음.

-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설비(중계기, 안테나, 케이블 등) 구축을 위해서는 연장 1km당 약 3.5억원이 소요되어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으로, 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중계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재정보화가 어려운 지자체 등에 있어서 신청이 저조할 수 있음.
- 동 내내역사업의 사업경과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9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도로공사 등 지원기관을 선정하였으나, 중계설비 설치가 12월에 완료되어, 2022년 예산 중 2억 6,800만원은 다음해인 2023년 1월 19일에 이르러서야 지원기관에 지급하는 등 집행과정에서 이월 문제가 발생하였고, 2023년에도 지원기관이 없어 10월 19일이 되어서야 지원대상을 선정한 바 있음.
- 2024년에는 초기 선정위원회 개최(6.13.) 시에는 한국도로공사(9개 터널), 강원도 영월군(1개 터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양호한 한국도로

공사에만 시설지원이 이루어졌음(9개 터널, 60대 총 5억원).

- 2025년에는 5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1차 공고를 통해 6개소를 선정하고,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2차 공고를 진행해 6개소를 추가 선정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중임.
-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의 수요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말 전국 시설관리기관 대상 사전 수요조사 및 주요기관과 협의 예정이며 2026년 사업신청 희망기관이 다수 있다는 의견임.
- 그러나 지원물량이 2022년 40대, 2023년 20대, 2024년 60대, 2025년 18대에서 2026년 218대로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 특히 50:50의 매칭방식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기관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점 등에서 수요 측면의 우려가 존재함.
-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연도 초기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매칭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사업의 전국적 확대 및 균형적 수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 할 필요가 있음.

3.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5) 가산금(58-581):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는 가산금 수입 편성 필요

- 「국가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하기 위하여, 매년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는 가산금 세목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가산금(58-581)’ 세목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7항¹⁷⁾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¹⁸⁾ 등에 따른 상품

17)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미납부나 보조금 부정 사용 등 관련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부과되고 있는 추가적인 납부 금액인 가산금을 수납하고 있는 수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¹⁹⁾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음.

○ 가산금의 2024년도 수입계획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1억 2,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 2,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음. 2026년도 수입 계획안에서 편성되지 않음.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의 융자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2026년도 가산금 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계획액	수납액	계획액 (A)	수납액			
☐ 가산금	-	7	-	-	-	-	-

주 1) 2025년 수납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는 가산금 수입 편성
필요

○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산금은 매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세목에 대해서는 수입에 편성되지 않아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산금의 징수결정액은 2021년 7,600만 원, 2022년 7,300만 원, 2023년 7,000만 원, 2024년 1억 2,800만 원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수입 계획액은 편성되지 아니하고 있음.

- 수납액도 2021년도 1,100만원, 2022년도 700만원, 2023년도 400만원, 2024년도 700만원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미수납액이 과다하여 수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산금 연도별 수납 현황(2021~2024)>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정수 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변경						
2021	-	-	-	76	11	14.5	65	-
2022	-	-	-	73	7	9.6	66	-
2023	-	-	-	70	4	5.7	66	-
2024	-	-	-	128	7	5.5	121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국가재정법」 제17조²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²¹⁾에 규정된 전대차관, 수입대체경비 등의 예외 사항

20)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1)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1항제6호²²⁾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²³⁾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기금의 재원으로 삼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가산금 수입은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령상 기금의 재원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수입 계획액이 편성되지 않아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가산금의 경우 기금 주요관리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이라고 보고 있음. 2024년도 동 수입의 징수결정액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부분이 6,500만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 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 1. 1.>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원²⁴⁾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5년 10월 1일 이관 부분)
소관 부분이 6,200만원²⁵⁾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하기 위하여,
매년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는 가산금 세목을 방송통신발전
기금 수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24) 3개 기업 6,500만원 가산금

25) 1개 기업 6,200만원

6) 아리랑국제방송지원(3131-302), 국악방송 지원(3131-304):

기금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리랑국제방송 및 국악방송 등 특정 방송사업자에 대해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감독기관과 예산지원 기관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 최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금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아리랑국제방송지원’ 사업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하는 아리랑국제방송의 TV프로그램 제작과 영어FM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며,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0억 4,800만원이 감액된 11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국악방송 지원’ 사업은 국악방송이 운영하는 국악방송의 라디오 채널프로그램, 영상콘텐츠 및 영상 채널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며,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억 2,600만원 감액된 4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아리랑국제방송 및 국악방송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획액	결산액 (실집행)	계획액 (A)	집행액 (실집행)			
☐ 아리랑국제방송지원	13,430	13,430 (12,982)	12,070	7,523 (5,701)	11,022	△1,048	△8.7
○TV프로그램 제작	11,655	11,655 (11,221)	10,475	6,529 (4,957)	9,427	△1,048	△10.0
○영어FM프로그램제작	1,775	1,775 (1,761)	1,595	994 (744)	1,595	-	-
☐ 세출예산비목	13,430	13,430 (12,982)	12,070	7,523 (5,701)	11,022	△1,048	△8.7
○ 민간경상보조(320-01)	13,430	13,430 (12,982)	12,070	7,523 (5,701)	11,022	△1,048	△8.7
☐ 국악방송 지원	5,842	5,842 (5,785)	5,258	3,523 (1,821)	4,732	△526	△10.0
○정규 프로그램 제작	1,967	1,967 (1,966)	1,770	1,186 (839)	-	△1,770	순감
○특집 프로그램 제작	260	260 (259)	234	157 (43)	-	△234	순감
○라디오 채널 프로그램 제작	-	-	-	-	1,803	1,803	순증
○국악 영상 콘텐츠 제작	749	749 (747)	674	452 (312)	670	△4	△0.6
○프로그램 제작지원	425	425 (378)	383	267 (162)	345	△38	△9.9
○한국음악의 명곡명연주 제작	77	77 (74)	70	47 (-)	-	△70	순감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2,364	2,364 (2,361)	2,127	1,425 (465)	1,914	△213	△10.0
☐ 세출예산비목	5,842	5,842 (5,785)	5,258	3,523 (1,821)	4,732	△526	△10.0
○ 민간경상보조(320-01)	5,842	5,842 (5,785)	5,258	3,523 (1,821)	4,732	△526	△10.0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9.

나) 검토의견

□ 문체부 소관 기관에 대한 기금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 방송사업자인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 및 국악방송에 대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²⁶⁾에 근거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지원연혁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는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 기관이 공보처로 일치하였으나,²⁷⁾ 2000년 「방송법」 제정과 함께, 방송 부분을 소관으로 하는 방송위원회가 출범하고, 공보처 소관의 공익자금이 방송위원회 소관의 방송발전기금²⁸⁾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예산지원기관은 ‘방송위원회’로 소관 기관은 문화관광부로 이원화된 것으로 비롯함.

- 이후 ‘국악방송’의 경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2009년부터, 시설운영비는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에서 지원

26)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27) 참고로, (재)국악방송은 공익자금이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된 2000년 이후 설립되었고, 국제방송교류재단은 1996년 설립되었음.

28) 언론공익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1980년부터 방송광고수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익자금이 확대되어 2000년 방송발전기금으로 개편되었고, 2011년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일부가 통합되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개편되었음.

하여 현재까지 프로그램 제작비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아리랑국제방송’의 경우 2021년 인건비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고, 2024년에는 경상비 편성도 모두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어 현재는 프로그램 제작비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악방송 지원연혁 >

구 분	2000 이전	2001~2010	2011~현재
예산 지원기관	공보처 (공익자금)	방통위(舊방송위 포함) (방송발전기금)	방미통위(舊방통위 포함) (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감독기관	공보처	문화체육관광부(舊 문광부 포함)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연도별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악방송 문체부/방미통위 지원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국제방송 교류재단	방발기금 (방미통위)	35,447	22,987	23,675	23,423	13,430	12,070	11,022
	일반회계 (문체부)	11,164	21,544	24,650	14,732	19,954	24,099	25,848
국악방송	방발기금 (방미통위)	6,700	6,370	6,470	6,456	5,842	5,258	4,732
	일반회계 (문체부)	9,376	8,999	8,841	11,096	10,521	10,549	11,362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가능함.

- 첫째,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문체부 소관 기관으로 문체부의 정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관부처인 문체부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 둘째, 지상파·유료방송·홈쇼핑 등의 다른 방송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기금 분담의무가 없는 특정 채널에 지원하는 것은 기금조성의 목적상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셋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²⁹⁾으로 재원이 한정되는 상황에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소관 불일치 문제에 대한 지속된 국회 지적에 따라 202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9) 방송통신발전기금 순자산은 2019년 763억원에서 2024년 △1조 4,165억원으로 크게 악화되었음.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산	7,400	4,777	5,723	5,800	4,429	4,886
부채	6,637	6,809	11,170	15,074	16,859	19,051
순자산	763	△2,032	△5,447	△9,274	△12,430	△14,165

○ 국회는 이에 대해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속하여 의결한 바 있으며,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시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기관과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문체부 예산으로 이관하도록 아리랑국제방송지원 및 국악방송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관련 부대의견³⁰⁾을 첨부해 의결한 바 있음.³¹⁾

[최근 5년간 관련 결산 시정요구사항]

구분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아리랑TV 및 국악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축소할 것	제도개선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과방위	○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 예산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	시정

주: 2024회계연도 결산은 아직 예결위·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임.

30) 2025회계연도 과방위 예비심사에서 채택한 부대의견

○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사업의 예산안을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의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 지원 사업의 예산안을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의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

31) 다만, 2025년도 예산안 예결위 심의에서 반영되지는 않았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정여력 및 기금운용의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예산 지원기관과 소관 기관을 일치시키는 것이 소관주의 원칙상 바람직하다는 점, 이와 관련한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일반회계 등으로 편성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는 감액할 필요가 있음.

7)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251-306):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관련 방미심위와의 면밀한 협조관계 구축 필요

-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미심위에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방미심위와의 면밀한 연계가 필요함.

가) 사업 개요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이 유해정보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모바일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에서는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내역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음.
-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정보(도박·마약·성매매)’의 유통방지를 위해 해외 주요 SNS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되었음.
- 2026년도 계획안에는 10억 4,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³²⁾할 계획이라고 함.

<2026년도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획액	결산액 (실집행)	계획액 (A)	집행액 (실집행)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629	1,629 (1,622)	1,466	1,129 (622)	2,291	825	56.3
○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	1,393	1,393 (1,393)	1,253	965 (520)	1,064	△189	△15.1
○ 클린인터넷서비스 환경조성	236	236 (229)	213	164 (102)	182	△31	△14.6
○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	-	-	-	1,045	1,045	순증
☐ 세출예산비목	1,629	1,629 (1,622)	1,466	1,129 (622)	2,291	825	56.3
○ 민간경상보조(320-01)	1,629	1,629 (1,622)	1,466	1,129 (622)	2,291	825	56.3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9.

< 2026년도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예산 세부내역 >

-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1,045백만원(신규)
 - 상시점검 결과분석 및 운영: 202백만원 = 67.5백만원×3명
 - 모니터링 지원시스템 운영 관리: 68백만원 = 67.5백만원×1명
 - 상시점검 모니터링: 634백만원 = 2.4백만원×12개월×22명
 - 모니터링 지원시스템 구축: 120백만원 = 120백만원×1식
 - 모니터링 운영경비: 21백만원 = 21백만원×1명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2) 참고로, 동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클린 인터넷서비스 환경조성' 사업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의무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점검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보조하여 수행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추진에 있어 방미심위와의
면밀한 협조관계 구축 필요

-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은 국내외 주요 SNS플랫폼의
도박·마약·성매매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현황 등 동향조사를 수
행하고, 플랫폼별 모니터링 기준을 수립하여 불법 유해정보 의
심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결과물을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을 구
축하고자 하며,
- 모니터링 결과 불법유해정보 의심 게시물일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개선 및 협조
요청을 진행하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음.

< 불법 유해정보 모니터링 절차 >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모니터링 기준 수립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실시	자체 플랫폼 및 방심위 신고 접수
모니터링 대상 사업자 조사 및 선정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수립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마련	상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자체 플랫폼 및 방심위 신고 접수
SNS플랫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	IDC센터	점검요원	신고 진행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대상 플랫폼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구체화할 예정이며, 국내외 유명 SNS플랫폼 약 20개 사이트를 기초 모니터링으로 선정하고, SNS플랫폼별 서비스 운영환경 및 불법 유통경로 사전 조사, 관련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함. 또한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함.
- 동 내역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관련 결과물을 저장·관리하고 있다는 점, 통신심의를 통한 구체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내 72명이 음란 및 성매매정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불법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유해정보 전담인력으로 사무처 일반직 46명이 불법·유해성 검토 및 회의자료 작성,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방미심위 통신심의 모니터링 인력 현황 (2025.10)>

위반유형	모니터링 대상	인원
법질서 위반정보	도박, 개인정보 침해, 불법금융, 사기 정보 등 관련 사안	7인
사회법익 침해정보	의약품 판매, 마약류 매매, 총기 및 화약류 제조, 문서위조/대리시험, 자살유발, 장기매매 정보 등 관련 사안	7인
유해정보	차별·비하, 폭력·잔혹·혐오, 인터넷 개인방송 정보 등 관련 사안	29인
저작권 침해정보	저작권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관련 사안	4인
음란·성매매정보	음란, 성매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및 광고 정보 등 관련 사안	19인
디지털성범죄정보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성 관련 초상권 관련 사안	6인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방미심위 2021~2025년 불법유해정보 범주별 전담인력 현황 >

구분	법질서 위반정보	사회법익 침해정보	유해정보	권리 침해정보	저작권 침해정보	음란·성매매정보	디지털성범죄정보	계
2021	7	7	6	5	3	7	7	42
2022	7	8	6	5	3	6	7	42
2023	6	7	5	5	3	7	7	40
2024	7	8	5	5	3	8	7	43
2025.9	7	7	6	6	4	8	8	46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또한, 방미심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뿐 아니라 경찰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식약처,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불법정보 대응을 위한 협력회의를 수시 개최하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플랫폼과는 자율심의협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2024년 ‘인터넷 마약정보 신속 차단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마약정보, 도박,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지식재산권 등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를 받는 신고 전용 페이지(report.kocsc.or.k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방미심위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해, 방미통위는 방미심위가 수행 중인 모니터링 및 심의·조치 업무는 주로 피해자 신고건을 대상으로 심의 신청된 내용 파악 및 심의자료 수집 등 사후적 확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동 내역사업은 목적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고, 시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 기관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보다 서술하면,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 정보의 심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심의기관인 반면,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조치 주체로서 자체적인 불법정보 유통현황 파악을 위한 즉시성 있는 모니터링 사업이 필요하며, 그동안 캄보디아 불법유인 광고·제주항공 참사 2차가해 정보·의료파업 복귀 전공의 인신공격 정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불법정보들에 대해 보조사업을 통해 모니터링을 수행한 바가 있다는 의견임.

- 이와 같은 기관 간 역할의 차이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그러나 방미심위가 수행 중인 업무와 상당 부분 기능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의 우려가 있으므로, 모니터링 범위나 양자 간 모니터링 결과공유 등 방미심위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긴밀하게 구축하는 등 사업추진체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8)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3133-303): 미디어교육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노력, 협약사업 적극 발굴 등 수입 다변화 필요

-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언론진흥재단이 각각 미디어교육 관련 양성프로그램과 자격증을 운영하는 상황으로, 미디어교육 관련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의존이 커, 정부정책이나 기금운용 상황 등에 따라 재단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력을 통한 협약사업 등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가) 사업 개요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3133-303)”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억 7,000만원(△15.9%) 감액된 18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세부사업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을 지원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 전 국민 대상으로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시청자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송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A)	집행액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21,665	21,655	22,433	14,047	18,863	△3,570	△15.9
○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	15,716	15,716	16,046	10,832	16,963	917	5.7
○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5,085	5,085	4,947	2,474	1,183	△3,764	△76.1
○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347	337	343	184	171	△172	△50.1
○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517	517	1,097	557	546	△551	△50.2
☐ 세출예산비목	21,665	21,655	22,433	14,047	18,863	△3,570	△15.9
○ 민간경상보조(320-01)	21,405	21,395	21,386	13,525	18,367	△3,019	△14.1
○ 민간자본보조(320-07)	260	260	1,047	522	496	△551	△52.6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9.

나) 검토의견

☐ 미디어 관련 자격증의 활성화 방안 등 모색 필요

- 현재 미디어교육의 경우 미디어 역량 개념이나 그 경계가 불분명함에 따라 부처별로 개별법 등에 근거하여 미디어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부처별 미디어교육 추진 근거>

- (방통위) 방송법 제90조의2, 제94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7조, 21조
- (문체부) 신문법 제35조, 지역신문법 제15조, 문화예술교육법 제15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 영화비디오법 제25조, 저작권법 제2조의2, 게임산업법 제12조의4
- (교육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
- (과기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 제54조, 제62조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2024.3.

- 방미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를 비롯한 미디어교육 전반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교육의 보급·확산을 위해 미디어교육 교수자를 양성하고 관련 자격증 제도인 ‘미디어교육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음.

<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 >

구 분	내 용
자격종목	· 미디어교육지도사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6-005370)
등록자격관리자	· 시청자미디어재단
검정기준	·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의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교육지도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검정
검정방법	· 필기시험(선다형 50문제), 실기시험(서술형 1문제), 총 100분 * 미디어교육의 기초, 이해, 실제로 구성
응시자격	· 미디어교육지도사 교육과정에 지원 및 교육생으로 선정되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자격활용	·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강사 선발 시 미디어교육지도사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 취득자에 서류전형 가점 적용 · 지자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자격증 활용 가능

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 또한 2022년부터 ‘미디어 교육사’ 1급, 2급 민간자격증을 신설하여 매년 자격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교육지도사’와 명칭과 세부내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미디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와 역할에서 공통점을 가짐.³³⁾

< 미디어교육 관련 자격증 비교 >

구분	미디어교육지도사	미디어교육사
주관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응시자격	재단이 개설한 30차시 온라인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급: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 또는 관련 분야 경력 보유자 1급: 2급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100시간 이상 강의경력
교육과정	30차시 온라인 강좌 (진도율 80%이상 이수 필수)	별도의 의무교육과정은 없으나, 시험 합격 후 직무교육 이수 필요
시험구성	필기: 객관식 50문항(미디어교육의 기초/이해) 실기: 서술형 1문항(수업계획안 작성)	필기: 객관식 120문항(미디어의 이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실기: 서술형(수업계획안 작성) / 1급은 강의 실연 포함
합격기준	필기 과목별 5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필기 과목별 40점 이상, 필기 및 실기 각각 70점 이상
응시비용	무료(교육과정 포함)	유료(2급 약 5만원, 1급 약 10만원)

- 그러나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 인원은 미디어교육사에 비해 많지 않은 편으로, 활용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보임.

33) 다만, 방미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 AI리터러시 등 미디어 전반에 대한 교육인 반면, 문체부는 신문 등 읽기 관련 교육으로 차이가 있다는 의견임.

-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미디어교육지도사’ 과정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학습할 수 있고, 이후 자격검정 시험에 접수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응시료는 무료로 제공됨.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교육사’의 경우 학력이나 경력 등을 충족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는 유료(2급 5만원, 1급 10만원)로 시험에 접수하는 식임.
- 현재 연도별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인원은 100명을 넘지 않은 상황이나, 미디어교육사 2급 자격시험의 경우 2022년 206명, 2023년 126명, 2025년 172명이 합격함.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인원>

연도	지원서 제출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9	40명	36명	30명	83%
2023	43명	43명	40명	93%
2024	169명	144명	85명	59%
2025	12월 예정			

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 나아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교육 경력강사 선발시 ‘미디어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교육강사로 지원할 수 없음. 반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교육 강사 선발 시 민간자격증은 서류전형 가점³⁴⁾으로 부여해 자격증이 없더라도 선발되는 등 차이가 있음.

○ 미디어 교육 소관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양 자격제도는 표준화나 일원화 등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두 자격증은 모두 민간자격증이나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언론진흥재단은 각기 국가공인자격 등록을 추진 중으로, 자격증의 사회적 통용성이나 경쟁력 등은 향후 미디어 교육 거버넌스 측면과 관련해서도 연계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되며, 자격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임.

- 이에 미디어교육 자격증 소지자는 미디어교육 강사 우선 선발 등 정책적 우대방안을 강화하고, 자격증 취득자의 지속적 역량 개발과 현장 실무체계 연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임.

34)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우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강사 선발 시 미디어교육지도사(시청자미디어재단) 2점, 미디어교육사(언론진흥재단) 자격증 1점을 적용하고 있음.

□ 미디어교육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미디어교육 저변 확대방안
강구 필요

-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인건비, 경상경비 등 대부분의 기관운영비를 방탈기금 등을 통한 민간보조사업비, 협약사업, 기부금 사업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수입/지출 >

수 입			지 출		
항 목	계획	실적	항 목	계획	실적
○ 정부협약사업(정부순지원)	44,444	44,323	○ 인건비	15,562	15,182
-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	21,665	21,655			
-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17,830	17,830			
-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1,468	1,444			
- 방송광고협찬고지모니터링기반구축	1,770	1,770	○ 사업비	30,658	29,156
-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	442	442	- 정부협약사업	26,366	25,174
- 공익채널운영실적점검평가	234	234	- 기타협약사업	4,016	3,857
- 재난방송 운영지원	52	52	- 기부금 사업	267	117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983	896	- 기타	9	8
○ 기타수입	9,386	9,386	○ 경상비	7,684	7,376
- 지자체분담금	5,050	5,050	○ 기타	-	2,069
- 기타협약사업 등	4,336	4,336			
○ 전기이월액(기타협약 및 기부금)	74	74			
합 계	53,904	53,783	합 계	53,904	53,783

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 이러한 상황에서 방탈기금 재정악화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2025년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감축’ 평가 등의 이유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억 7,000만원(15.9%)가 감액된 18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단의 주요사업인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부문이 2025년 49억 4,700만원에서 2026년 11억 8,300만원으로 약 76%가 삭감됨에 따라 미디어 교육사업의 위축 등 재단의 핵심적인 공적 역할이 위축될 수 있음.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 세부산출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 민간경상보조(320-01) : 21,386백만원 ①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 : 16,046백만원 가. 인건비 (10,951백만원) 나. 재단본부 경상비 (1,736백만원) 다. 12개 지역센터 경상비 (3,291백만원) 라. 정보전산 고도화 (68백만원) ②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 4,947백만원 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4,863백만원) - 지역센터 상시교육 : 200백만원×12센터 = 2,400백만원 - 소외계층 지역 미디어교육 : 교육운영(3.15백만원×118개 기관) + 나눔버스(80백만×8대) = 1,012백만원 -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 지원 : 교육 3.3백만×36단체 = 119백만원 - 유아 미디어교육 : 3.66백만×64개 기관 = 235백만원 - 청소년 미디어교육 : 4.34백만원×253개교 = 1,097백만원 나.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84백만원) - 미디어강사 양성 및 연수 : 5.22백만원×9센터=47백만원 - 미디어교육 연구 : 27백만원×1주제=27백만원 - 미디어교육 정기간행물 : 5백만원×2회=10백만원 ③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 343백만원 가. 시청자 권익정보센터 운영 (343백만원) ④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 50백만원 가. 센터건립 구축부대비 (50백만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1,047백만원 ①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 1,047백만원 가. 신규센터 구축 설계비 (87백만원) 나. 센터 노후인프라 개선 (260백만원) 다. 미디어버스 구축 (7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8,367백만원 ①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 : 16,963백만원 가. 인건비 (11,868백만원) 나. 재단본부 경상비 (1,820백만원) 다. 12개 지역센터 경상비 (3,207백만원) 라. 정보전산 유지보수 (68백만원) ②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 1,183백만원 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1,109백만원) - 지역센터 상시교육 : 38백만원×12센터 = 456백만원 - 소외계층 지역 미디어교육 : 교육운영(3.15백만원×12개 기관) + 나눔버스(41.5백만×10대) = 453백만원 -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 지원 : 0백만원 (순감) - 유아 미디어교육 : 3.66백만×12개 기관 = 44백만원 - 청소년 미디어교육 : 4.34백만원×36개교 = 156백만원 나.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74백만원) - 미디어강사 양성 및 연수 : 5.22백만원×6센터=32백만원 - 미디어교육 연구 : 27백만원×1주제=27백만원 - 미디어교육 정기간행물 : 5백만원×3회=15백만원 ③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 171백만원 가. 시청자 권익정보센터 운영 (171백만원) ④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 50백만원 가. 센터건립 구축부대비 (50백만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496백만원 ①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 496백만원 가. 신규센터 구축 설계비 (133백만원) 나. 센터 노후인프라 개선 (363백만원)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5년 5월 「방송법」 제90조의2에 근거하여 출범하였으며, 2016년 2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후 2023년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었음.
- 공공기관 정책은 경영 효율화, 재정건전성, 자율·책임경영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추세로, 기타공공기관이라고 하여 자체 수입 확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경영, 재정안정성, 경영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정부예산 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수입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2025년 10월 기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자체·교육청 등과 25건의 협약사업을 통해 12억 4,900만원, GS리테일 등 3건의 기부금사업을 통해 9,5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고 있음.

< 재단의 협약사업 및 기부금사업 현황('25.10)>

구분	건수	금액
협약사업	지자체·교육청 등 25건	1,249백만원
기부금사업	GS리테일 등 3건	95백만원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종합하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부정책이나 기금운용 상황에 따라 재단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공적 역할에 부합하되,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을 통한 협약사업 등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